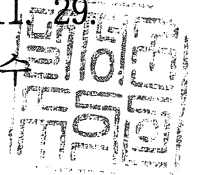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1788
----------	------

제출일자 : 2019. 11. 29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군의회에 보고 하고자 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3. 주요내용

- 2017년 군의회 제260회 정례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을 보고한 후 2년이 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총 7개소, 도로6, 녹지1)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

4. 도시계획시설 현황

○ 달성군 내 전체 도시계획시설(달성군 소관) 3,116개소 중 미집행시설은 686개소

○ 금회 의회보고 대상인 2019년 새로이 장기미집행이 된 시설은 없으며,
2017년 보고 후 2년이 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7개소

(2019. 12. 31.기준)

시설 구분	시설 세분	전체		집행		미집행시설								집행율 (%)
						미집행전체		10년미만		10년도래		10년초과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건수	면적 (㎡)	
합계		3,116	14,186,979	2,430	11,080,384	686	3,106,595	54	514,637	-	-	632	2,591,958	78.1
도로	소계	2,435	5,862,247	1,829	4,871,258	606	990,989	48	115,867	-	-	558	875,122	83.1
	중로	313	2,279,160	290	2,138,773	23	140,387	1	15,497	-	-	22	124,890	93.8
	소로	2,122	3,583,087	1,539	2,732,485	583	850,602	47	100,370	-	-	536	750,232	76.3
주차장	노외주차장	95	169,111	64	152,301	31	16,810	1	213	-	-	30	16,597	90.1
광장	경관광장	1	19,650	-	-	1	19,650	1	19,650	-	-	-	-	-
공원	소계	94	222,907	67	145,005	27	77,902	3	47,182	-	-	24	30,720	65.1
	어린이공원	70	151,545	59	130,685	11	20,860	-	-	-	-	11	20,860	86.2
	소공원	21	15,154	7	4,932	14	10,222	1	362	-	-	13	9,860	32.5
	문화공원	3	56,208	1	9,388	2	46,820	2	46,820	-	-	-	-	16.7
녹지	소계	198	3,010,857	178	1,341,338	20	1,669,519	-	-	-	-	20	1,669,519	44.6
	완충녹지	139	2,775,579	119	1,106,060	20	1,669,519	-	-	-	-	20	1,669,519	39.8
	경관녹지	49	144,498	49	144,498	-	-	-	-	-	-	-	-	100.0
	연결녹지	10	90,780	10	90,780	-	-	-	-	-	-	-	-	100.0
연구시설	연구시설	5	1,440,595	4	1,108,870	1	331,725	1	331,725	-	-	-	-	77.0
기타시설	기타시설	288	3,461,612	288	3,461,612	-	-	-	-	-	-	-	-	100.0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19. 12. 31.기준)

구 분	시설구분	시설세분	시설수	미집행면적(㎡)	비 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 계		632	2,591,958	
	도 로	합 계	558	875,122	
		중 로	22	124,890	
		소 로	536	750,232	
	주차장	노외주차장	30	16,597	
	공 원	합 계	24	30,720	
		어린이공원	11	20,860	
		소공원	13	9,860	
	녹 지	완충녹지	20	1,669,519	

○ 2019년 새로이 도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없음

○ 2017년 보고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2년이 될 때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2019. 12. 31.기준)

구 분	시설구분	시설세분	시설수	미집행면적(㎡)	비 고
2017년 보고한 시설 중 2년이 지난 시설	총 계		7	58,691	
	도 로	중 로	1	7,911	중로3-313
		소 로	5	578	소로3-하1
				2,579	소로2-논108,
				628	소로2-다78,
				259	소로3-논76,
	녹 지	완충녹지	1	1,081	소로3-다108
				45,655	중부내륙고속도로변 완충녹지

6. 2019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472개소(군비 471, 국·시비 1)

※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실효 및 부분실효 대상 214개소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제외 (도로 202개소, 녹지 10개소, 공원 2개소)

※ 연구시설(DGIST)은 국·시비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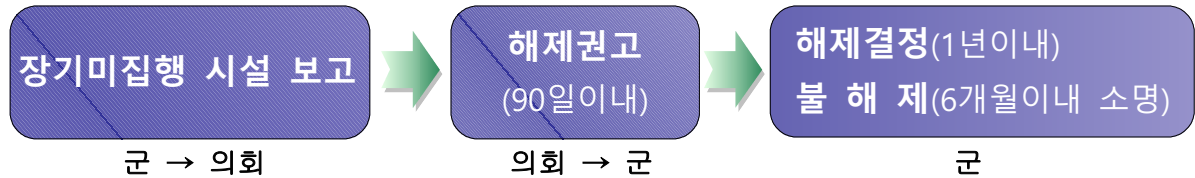
(단위 : 천㎡, 억 원)

구분	시설 구분	합 계			2020년~2022년 (1단계)			2023년~2025년이후 (2단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472	1,165	6,032	251	541	1,919	221	624	4,113
군비	소계	471	834	2,270	250	505	1,514	221	329	756
	도로	404	667	1793	235	421	1,205	169	246	588
	주차장	31	17	55	—	—	—	31	17	55
	공원	25	74	148	11	15	55	14(4)	59	93
	녹지	10	56	77	3	49	57	7	7	20
	광장	1	20	197	1	20	197	—	—	—
국·시비	연구시설	1	331	3,762	1	36	405	(1)	295	3357

참고 1

의회보고 절차 및 해제 권고 시 고려사항

○ 의회보고 및 처리절차



○ 해제 권고 시 고려사항

-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
-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도시개발계획, 환경 등)
-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참고 2

관계법령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제4항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항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붙임 :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서(별첨)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별첨)